

성북구인사위원회 의결서

1. 회의일시 : 2014. . . .
2. 안건 : 시간제임기제공무원 “마”급 3명 신규임용
조건 및 자격, 채용의 필요성, 업무내용
3. 의결사항 : 불임과 의결함
4. 기타사항 : 회의록은 의결서로 같음하고 그 작성을 생략함

2014. . . .

성 북 구 인 사 위 원 회

위원장 :	(인)
부위원장 :	(인)
위원 :	(인)
위원 :	(인)
위원 :	(인)
위원 :	(인)
위원 :	(인)

첨 부 : 의결내용 1부

의 결 내 용

1. 회의일시 : 2014. . . .
2. 회의장소 :
3. 의결요구 (안)

1) 시간제임기제공무원 “마”급 채용의 필요성, 신규임용 조건 및 자격, 업무내용.

가. 채용의 필요성

- 취약계층대상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및 『65세, 0세 1:1 맞춤형 보건복지플래너 시범사업』을 통한 보편적 방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간호사 필요

나. 신규임용 직무내용

- 채용직급 및 인원 : 시간제임기제공무원 “마”급 3명
- 담당업무
 - 방문건강관리사업
 - 65세, 0세 1:1 맞춤형 보건복지플래너 사업

다. 신규임용 자격

- 응시연령 및 성별 : 제한 없음
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- 경 력
방문건강관리사업 경력이 있는 자
- 자 격 증
간호사 면허증 소지자
- 기 타
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
4. 의결내용 : 요구(안)으로 의결함